



산별노조·지역지부·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

결선투표

선거사무



결선투표 개요

- 민주노총 임원 또는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. 결선투표 일정은 현장투표 투표용지 제작→지역배부→현장배부 시간을 감안하여 12월10일(일)~12월 14일(목) _ 5일 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. .
- 특정 지역본부 만의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지역본부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직접 공고합니다.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결선투표 일정공고는,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공고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. 단, 결선투표의 문항(찬반, 또는 1~2위 문항)은 연장투표와 일부재투표의 개표가 완료되자마자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결선투표는 투표율 과반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.

01 결선투표 공고

민주노총

11.27(월) ~ 29(수) 사이에 결선투표 사유가 있는 선거구를 의결하여 공고문_서식9호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11/29(수) 중에 게재하고 산별노조(연맹)와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포합니다.

(단, 만일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공고가 있을 경우에 해당 공고와 본 공고가 함께 나갑니다. 이 경우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완료 및 개표 뒤에 재공고합니다.)

지역본부와 산별노조(연맹)

이를 전체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.

단위조직

게시판 출력 부착,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, 문자·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. 단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공고문의 투표 일시장소를 기재하여 공지해야 합니다.

※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여러 형식의 공고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니 해당 단위조직은 이를 출력하여 부착해도 됩니다.

※ 지역본부별로는 따로 공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.

공고문에 아래 사항이 안내 됩니다

1차 투표 시 현장투표를 진행했던 투표구·투표소 선거인의 투표를 이번 결선투표 시에는 모바일투표(또는 ARS투표)로 바뀌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지역본부선관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02 결선투표의 실무준비 · 투개표

지역본부

단위조직(투표구)과 시급히 소통하여 해당 현장투표의 일시장소를 취합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.

결선투표 일시 수립 불가 통보 투표구 · 투표소
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지한 일정 내에 현장투표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단위조직(또는 투표구)은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전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.

기존 현장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뀌서 치르려는 투표구 · 투표소

- 결선투표 시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전체 선거인을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지역본부가 해당 단위조직과 협의하여 서면_서식89호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요청합니다.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직접 정정 조치합니다.

민주노총

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 현장투표→전자투표로의 정정사항까지 반영된 명부중, 투표구·투표소의 현장투표 명부에 한해 해당 지역본부가 내려받기-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둘 것입니다.

지역본부

현장투표의 투표구 또는 투표소에 선거인명부·투표함·투표용지를 비롯한 투표관계서류를 배부합니다. 배부 방법은 본 투표 때 안내한 업무와 같습니다. 단 관련 기간을 단축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별도 안내할 것입니다.

단위조직

현장투표일에 지역본부로부터 배부 받은 투표용품 및 투표관계서류로 현장투표를 실시합니다. 필요 사무는 <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현장투표>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. 단 관련 기간을 단축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별도 안내할 것입니다

민주노총

전자투표일에 투표를 실시합니다. 필요 사무는 <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전자투표>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.

개표

개표에 필요한 사무는 <현장투표의 개표>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.